25.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O 제안일자 : 2022년 9월 30일
- O 제 안 자 : 허시영, 김지만, 손한국, 윤권근, 이영애, 전태선, 정일균,

황순자 의원

- O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4일
- O 상정일자
 - 대구광역시의회 제296회 임시회
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22년 10월 14일):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**요지** (제안설명자 : 허시영 의원)

□ 제안이유

○ 건축물관리의 제도의 운영에 있어 외부 전문가의 활용을 위해 시행 중인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공개모집 관련 사항 중 일부 규정을 현장의 여건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,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해진 조항을 정비하는 등 공모 참여자의 편의개선과 합리 적인 제도의 운영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건축물관리 점검기관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 방법 중 연 1회로 고정되어 있는 모집기간을 매년 1회 이상으로 개정하여 현장과 행정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모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(안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).
- 건축물 해체공사에서의 안전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, 그간 본 조례에 규정하여 운영해오던 해체공사의 상주감리원 배치대상과 기준 등에 대해 「건축물관리법 시행령」으로 규정 하도록 「건축물관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제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체계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함(안 제7조제3항부터 같은 조 제5항까지).

3. 검토보고 **요지**(보고자 : 전문위원 김건호)

-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의 모집·신청 및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합리적인 제도의 운영과 상위법에서 정한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임.
- 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안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시장이 「건축물 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"영" 이라 한다.)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기관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하거나 영 제22조 제1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의 등록을 위한 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 기존 "연 1회 정기적으로 공개모집"에서 "매년 1회 이상

공개모집"으로 변경하였는데,

- 이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위해 활용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공개모집 사항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, 현장 여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모집공고, 명부 작성·관리 및 지정 등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7조제3항부터 같은 조제5항까지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과 관련된 상주감리 규정을 삭제한 것은 「건축물관리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철거 시(해체허가)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배치가 의무화되고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등이 상위법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체계를 따르도록 한 것으로, 근거 규정을 일원화하고 시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O 없음
- 5. 토론요지
 - O 없음
- 6. 수정안 요지
 - O 없음
- 7. 심사결과
 - O 원안 가결(재석위원 전원 찬성)
- 8. 소수의견 요지
 - O 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
 - O 없음